

3월 31일까지). 기무사령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 본인은 제가 소속되어 있던 육군 31사단 헌병대 영창(광주시 오치동 소재)에 신병이 인도되어, 그곳에 배속되어 있던 군 검찰부의 현 모 중위로부터 제 2차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같은 해 4월 19일까지). 검찰 조사 후 기소되어 “9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제 1차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8월 말 경 열린 제 2차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나기까지 대략 5개월 간 헌병대 영창과 육군교도소(경기도 장호원 소재 - 1차 군 재판이 끝난 이후 6월 중순 경 31사단 헌병대에서 육군교도소로 신병이 인도됨)에 복역하였습니다.

8) 선고 형량: 항소심 형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98년 9월 현재 형 집행 중)

9) 사건의 부당성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소위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탄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법적·규범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독립운동가들과 대다수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당연히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혹 독재정권의 안정이나 일부의 부패한 정치세력 및 군 관료와 공안기관원들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천부적인 인권)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위헌적(違憲的) 요소들을 제거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양심수들과 장기수들이 석방되고, 최근에는 ‘국민 인권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우리사회의 인권이 대폭 신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사건을 포함하여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99%가 엄밀하게 말하면 ‘군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 내에서 구속·기소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의 대다수가 군대에 입대하기 이전의 대학시절이나 사회활동 시절에 잠시 관여하였던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사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이같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와도 괴리된 것으로서 술한 인권의 유린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군 입대 전의 과거의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같은 처벌이 옳은 것이었다면 어떻게 제가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이던 지난 96년 10월 “육군 학사장교” 모집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이듬해 7월·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입대 후 장교 기초 양성과정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현역 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구속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전의 대학시절의 활동을 사유로 구속·기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서 입대할 수 있었고,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통해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은 대학시절의 학생운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능히 현역 장교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부와 군 검찰 당국 및 군 재판부에서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5개월 간 -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강제구금 시설에 저를 수용한 것은 분명한 인권의 침해 및 공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는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재의 부당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가 아닌 곳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부 당국의 사면조치에 의해서 복권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독 군 복무 중 과거의 활동경력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젊은이들은 그 자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도 취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과 연수 등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없는 ‘영원한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나 ‘시민의 권리’나 하는 추상적인 원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군대 이외의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이후 사면·복권되는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극히 불공평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활동을 이유로 동일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 복무 중에 구속된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짐을 평생토록 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얼마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 중에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가 군 복무 중에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구속 사유와 처벌의 근거는 군 입대 이전, 그것도 4년 전의 활동을 빌미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대 내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회에 나와서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더 가혹한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리행위와 인권침해의 사실이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되어 일정한 자정의 노력이 진행되는 사회의 일반 교도소(민간 교도소)와는 달리, 군대 내의 영창과 교도소는 매일같은 강제적인 노역과 육설·구타 및 체벌 행위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양 군 교도관과 헌병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시설의 일반적인 원칙, 즉 '사회 일반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켜 소양교육을 통하여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시설체'라는 자신의 설립 원칙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군사파시즘('권위주의' 정권)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군 교도소와 헌병대 영창의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저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이번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는 군대 내부의 각종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는 귀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사항

- 1) 성명 : 이 승 일(李承日)
- 2) 주소 : 본적 - 전북 부안군 하서면 [redacted]
주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redacted]
- 3) 생년월일 : 1973년 1월 20일생
- 4)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군번 : 97-[redacted]
- 5) 현재근무지 : 해양경찰 전경(전투경찰순경)으로
군산해양경찰서 경무과 타격대 근무중
- 6) 연락처 : ([redacted], 교환 정문

2.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 1) 사건개요 : 별첨한 "황토현"전북대 교지 참고
- 2) 진행상황
 97. 2. 17 해양경찰 전경에 지원입대
 6. 25 국가보안법(고무, 찬양)위반으로 긴급체포
 6. 26 구속으로 직위해제됨 - 근거:전투경찰대 설치법, 별첨
 8. 25 보석허가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됨
----- 이후 1심 재판 계속 진행됨 -----
 98. 2. 13 1심 판결선고
본인은 선고유예 선고받음(부분무죄, 부분유죄 판결)
 3. 검찰의 항소와 본인등 피고인들의 항소로 2심 진행
----- 97. 8. 25 보석 석방이후 복직신청을 3차례 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고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복직이 되지않음 -----
 6. 22 복직되어 현재근무중
----- 현재 2심 진행중, 98. 11. 4선고공판 예정 -----

3. 문제점

- 1) 전투경찰 설치법에 의해 97. 6. 26 직위해제되어 98. 6. 22까지 복직되기전까지의 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함 - 근거 : 전경대 설치법 별첨
- 2) 만약 최종 재판에서 무죄판결시 군복무기간으로 산입되고
유죄판결시 군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고 1년의 시간을 더 근무해야됨
- 3) 97. 8. 25보석석방이후 군산해양경찰서에서 복직신청을 3차례나 했으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의 불허로 복직이 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98. 6. 22복직됨
결국 해당관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본인만 피해를 보게됨

4. 기타 승일의의 생각하나

얼마전 신문에서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구속이 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라는 원칙(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또한 공무원법에 적용받지는 않겠으나 여하튼 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인 전투경찰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 구속으로 직위해제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끝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요지)

○ 진 급

- 수 경 : 상경으로 8월
- 상 경 : 일경으로 7월
- 일 경 : 이경으로 3월(임용일로부터 3개월)

○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복무를 이탈한 기간
-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 휴직 기간
- 징계·직위해제 중에 있는 기간

○ 진급의 제한

-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자
- 2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징계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정직 6월, 감봉 4월, 영창 3월, 근신 2월, 견책 1월
- 복무이탈중에 있는 자
- 직위해제, 휴직,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

○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이탈자는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 15일 이내 귀대치 않을 때 탈영삭제, 현원에서 제외,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휴 가

- 연가는 년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 93년 1월 1일 ~ 12월 31일 입영자

구 분	계	1 회	2 회	3 회
기 간	40 일	15 일	15 일	10 일

- 94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

구 분	계	1 회	2 회	3 회
기 간	35 일	15 일	10 일	10 일

- 공가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

-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 청원휴가

-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휴가 : 년 2월 이내
- 직계가족(부모, 처, 자)의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생활이 곤란할 때
: 연 20일 이내

- 위로휴가

- 훈련, 견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 7일 이내

- 포상휴가

-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모범 전경 : 10일 이내

○ 남 인 시 직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급고의 형 신고

○ 지 권 면 지

- 신·공·시상 능 실원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 생사 불명자가 휴직 만료일까지 소재 불명자
-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자로서 부서까지

○ 휴 직

- 사상으로 복무를 감당치 못할 때
- 생사 불명자

○ 직 위 해 제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 복무기간에 산입치 않는 기간

-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
- 복무이탈 기간

○ 퇴 직 보 류

- 복무이탈, 실종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 전상·공상 이외의 질병으로 입원가료중에 있을 때(본인이 원하면 전역)

※ 개인 기본 용품

품목 구분	연 초	치 약	치 술	세수 비누	세탁 비누	수 건	휴 지	구두약	구두솔	볼 펜
수 량	10개비	1개	1개	1개	2개	1개	2개	1개	1개	1개
기 간	1일	1월	2월	1월	1월	3월	1월	1월	3월	1월

대 약 , 권 리 찾 기

자, 이제 권리를 말해보자
전북대학교는 **박경익** 학교를
만화, 오! 나라야

대 약 권 리 찾 기
151

전북대학교 학교 신문 박경익 학교 신문

들어가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전북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에서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수감생활과 2만 전대인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등을 부탁하는 글 청탁의 편지였다. 편지를 전달해 주는 교도관은 편지와 함께 당부를 잊지 않았다. 당부의 내용은 글 청탁을 거부하라는 것이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개인을 상대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글은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글을 쓸 수 없는 상황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편지지에 여백이 있어 중얼거리 보았던 시를 한편 적어 보냈다. 그리고 두어달이 흘렀을까? 후배로부터 약간은 당황스럽게 하는 편지를 받았다. 교지에 시가 실렸다는 것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하는 후회를 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쓴 답장, 심심해서 적어보았던 시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도소에 수감중에는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출소 후 다시 청탁한다면 얼마든지 청탁을 받아들일것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편지가 교지에 실림으로써 교지편집위원과의 약속을 넘어 2만 전대인과의 약속이 되어버린 것이다.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2만 전대인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변론을 해주신 전봉호, 안호영 변호사님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주시는 조순구·유용교 교수님, 상대 1호관 수위아저씨, 김남직·모영숙·배진희 학우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혁신대오에 관한 글을 실어 주시는 교지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엄성복

95년도 본교 총학생회장

■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

- 1) 주영식 -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87학번, 91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93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94년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95년 전북총련(전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당시 대전교도소 경비대원
- 2) 이승일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2학번, 94년 사회과학대학 부회장, 95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96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당시 군산해양경찰서 전투경찰
- 3) 홍진희 - 법과대학 사법학과 89학번, 95년 법과대학 학생회장, 당시 회사원
- 4) 최지훈 -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93학번, 96년 인문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시 공무원
- 5) 이대규 - 상과대학 경영학과 89학번, 96년 총학생회 인간중시위원장, 당시 무직
- 6) 김선미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90학번, 94년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95년 96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97년 전북총련 선전국장, 당시 전북총련 선전국장
- 7) 김동섭 -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 90학번, 95년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96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시 휴학중
- 8) 소현민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4학번, 96년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97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 9) 유영산 - 농과대학 축산학과 93학번, 95년 농과대학 동아리 느티나무 회장, 96년 농과대학 학생회장, 97년 농과대학 인간중시위원장, 당시 농과대학 인간중시위원장
- 10) 엄성복 - 공과대학 공업화학학과 89학번, 93년 공과대학 대의원 의장, 94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95년 총학생회장겸 전북총련 의장, 96년 전북총련 기획실장, 당시 전주교도소 수감중
- 11) 유호 - 농과대학 농기계 93학번, 97년 농과대학 부회장
- 12) 양진건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0학번, 93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95년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당시 군복무중
- 13) 오동국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0학번, 95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시 군복무중
- 14) 송승룡 -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90학번, 95년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 당시 군복무중
- 15) 진민중 -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90학번, 95년 총학생회 총무부장, 당시 공익근무요원
- 16) 최용원 - 법과대학 공법학과 93학번, 95년 법대 동아리 한소리회장, 당시 군복무중
- 17) 조진구 - 상과대학 경제학과 92학번, 95년 백두한라 분과장, 당시 군복무중
- 18) 김진욱 - 상과대학 경제학과 89학번, 94년 상과대학 학생회장, 96년 총학생회장겸 전북총련 의장, 97년 전북총련 기획실장, 당시 전북총련 기획실장
- 19) 오경섭 - 공과대학 공업화학학과 89학번, 95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겸 인간중시위원장, 96년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97년 전북총련 집행위원장, 당시 전북총련 집행위원장
- 20) 임성중 - 농과대학 농공학과 92학번, 95년 농과대학 학생회장, 96년 총학생회 정치국장, 당시 전주교도소 수감중

검찰 공소 내용

88년경부터 자주적 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비밀조직인 "전북대 자주대오"가 활동해 오던 중 우석대, 원광대 등 타대학과 부산대 등 타지역에서 자주대오 조직사건이 발생하자 95년 10월 21일 상대 시청각실에서 자주대오를 계승한 혁신대오를 결성하였다는 것이다. 자주대오 혁신대오에서는 정치학교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을 사상학습 시켜왔고 매년 10월 선거를 즈음하여 자주대오 혁신대오 개편대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1000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자주대오 혁신대오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교육하여 이를 추종해 왔으며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여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운동을 전개해 왔고 김영삼 정부를 파쇼정권으로 규정하여 폭력혁명을 통한 김영삼 타도를 주장하는 반체제 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자주대오 혁신대오의 진실

그동안 전북대를 중심으로한 전북총련은 건전한 학생운동을 주도해 왔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93년이후 단 한차례의 폭력시위도 한적이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집회를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하였기에 한총련에서 전개하는 폭력시위를 비판해 왔으며 한총련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또한 친북적인 통일 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하여 왔다. 전북대를 중심으로한 전북총련이 그동안 얼마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을 지향해 왔으며 친북적인 통일운동에 반대해 왔는지는 기간 전북지역 학생운동이 걸어왔던 몇가지 사실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95년 전북총련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던 범민족대회에 친북적행사를 하여 불참하였다. 학생운동내에서 전북총련만이 유일하게 범민족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신문등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했다. 둘째 96년 한총련 출범식을 평화적으로 개최하였다. 당시 전북대 총학생회는 한총련 지도부를 설득하고 경찰을 설득하여 한총련 출범식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한총련 출범식을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건전한 학생운동을 주도해 왔던 전북대 학생운동을 조직사건을 통하여 탄압한 의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학생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대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폭력적이고 친북적인 한총련 주류계열을 탄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는 사건으로는 고려대 "청년"과 서울대 "애청" 조직사건을 들 수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이 발생했던 97년 6월에 고려대 서울대 조직사건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말지 97년 7월호 참조) 앞에서 말한 고려대 청년 서울대 애청은 전북대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학생운동방식에 동의해 왔던 곳이다. 즉 기존의 학생운동이 폭력적이고 친북적이어서 많은 학우들과 국민들로부터 지지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수진영의 시각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북대를 중심으로한 건전한 학생운동은 학우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전북대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학생운동이 눈의 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다. 혁신대오 조직사건을 조작한 중심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경찰조사과정에서도 경찰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내용이다. 시기적으로도 96년 연세대에서 있었던 범청학련 행사와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북대를 비롯한 새로운 학생운동 진영까지 싸잡아서 탄압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검찰주장에 대한 반론

첫째: 피고인 진술의 문제점 - 검찰은 전북대내에 자주대오가 존재해왔었고 현재 혁신대오가 존재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군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감압이 있었고 군이외의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주대오와 혁신대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대오와 혁신대오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사람들간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각각이라는 점이다. 조직 총책이 서로 다르고 자주대오 개편대회나 혁신대오 결성식의 참가인원 및 장소도 각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시기상 모순성 - 검찰은 매년 10월 중순에 자주대오 개편대회나 혁신대오 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월중순은 매년 11월에 있는 각급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자주대오 개편대회나 혁신대오 결성식이 아니라 선거운동원 표양대회 및 후보자 추대식이었던 점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95년 10월 21일 혁신대오 결성식날은 분명 선거운동원 표양대회 및 후보자 추대식이 있었던 날이었다. 즉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의 모임을 비밀조직 모임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표양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해 주었다.

셋째: 장소의 문제점 - 검찰은 혁신대오 결성식을 상대 시청각실에서 앰프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 시청각실 주변은 휴일에도 많은 학우들이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앰프를 사용하면 밖에까지 앰프소리가 들리는데 그런곳에서 비밀조직 결성식을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넷째: 증거물의 문제점 - 검찰은 증거물로 1000여종에 달하는 책자와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총련, 전북총련,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의 명의의 자료들이다.

대학, 권리찾기
[9]

대학, 권
[8]

또한 검찰이 자주대오 존재와 혁신대오 결성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재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의뢰한 서울대 사회학과에 의뢰했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는 한상진교수에게 의뢰하여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였다. 감정결과 한상진 교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적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며 특히 전북총련이나 전북대학교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모두 이적성이 없다고 감정하였다.

항소를 준비하며

혁신대오는 무죄를 선거 받았지만 자주대오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전북총련 간부학교, 전북대학교 간부학교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과연 혁신대오는 없는데 자주대오는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으며 혁신대오에 비해서 증거력도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주대오에 대한 유죄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전북총련 간부학교, 전북대학교 간부학교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더욱 납득할 수가 없다. 분명 전북총련 간부학교, 전북대학교 간부학교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공식의뢰한 한상진 교수의 감정결과를 무시한 판결이라 볼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며 부분무죄가 아닌 완전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준비중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얼마전 법무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신중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진정으로 바라건데 국가보안법이 기존처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 해가가는 행동은 간첩죄등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설령 간첩죄적용의 범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간첩죄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악법에 불과하다. 또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방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법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란다. 왕토

3. 군복무자가 증언하는 군내의 인권현황

증언자

1. 문창준 () - ()
2. 박광철 () - ()
3. 김성희 () - ()
4. 주혁환 () - ()
5. 신재근 () - ()

시국관련출신자들에 대한 군내의 인권탄압사례보고

1.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대학 : 문창준() 광주 대학교, 94학번

주소 : 전남 장흥군, 읍 평화리 ()

2. 군복무기간 및 소속부대 : 경기도 일산 백마부대 9사단

3. 군내의 시국관련출신들에 대한 인권탄압 사례

- 입영후 1개월 마다 기무사에서 조사 중대장과 소대장을 통해 매월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를 기무부대에 보고 또는 기무부대에서 직접 면담과 감시를 하기도 함.
- 부대생활에 여러 가지 감시와 사찰이 자행이 되어 군복무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호소함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 군대내 조직에서 철저하게 감시받고 합법적으로 관리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함

4. 남기고 싶은 말

- 기무부대의 정치사찰과 시국관련 학생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근절되었으면 함 이렇게 군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군내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음을 국방부와 기무부대에서는 인식해야 할것임.
- 국방부와 기무부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에 한치의 헛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국관련출신자들에 대한 군내 인권탄압사례보고

1. 인적사항

이름 : 박광철()

주소 : 경기도 안산시 ()

2. 군복무기간 및 소속부대

입영일 : 94년 12월 24일

근무지 : 56사 PX근무

3. 탄압사례

91년 명지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구속 수감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 94년 군 입대. 훈련소 시절 시국관련 학생출신들을 모조리 불러내 병역카드 작성(빨간색 표시)하였고 내무반(행정반)에서 과거 활동에 대해 낱낱히 밝히려는 진술서를 쓰게함.

또 보직 선정에서도 헌병으로 차출되었다 시국관련 수형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소 됨. 부대 배치받고 일병 시절에는 기무부대에서 이유없이 자주 찾아 오고 선임병을 통해 감시하게하여 수시로 기무사에 보고하게 함.

기무부대 상사가 선임병(동국대 국문과 서회원)을 불러내서 후임병은 문제있는 사람이므로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면회오는지등을 관찰하여 기무부대 상사가 올 때 암호(특정한 표시)를 작성하여 쪽지등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함.

가방은 수시로 뒤지기도 함.

4. 남기고 싶은 말

시국관련 출신자들에 대해 여전히 보직이나 비밀취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뿐아니라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적 감시 사찰등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국관련출신자들에 대한 군내 인권탄압 사례보고

1.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 김 성 희 ()

2. 군복무기간 및 소속부대 : 95. 5. - 97. 7.

17사단 102연대 연대본부 근무소대

3. 군내의 시국관련출신들에 대한 인권탄압 사례

93-94년에 학생운동을 하였고 집회도중 연행,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 하자, 군에 입대하였는데 자대배치후

1) 소속중대 서무병(최경주)이 일주일 단위로 연대 기무대에 생활과 동향을 보고함 (위 사실은 전역할 때 서무병이던 최 경주가 직접 얘기해서 알게됨)

2) 군복무 기간동안 기무대 중령과 중대장이 배석한 채 3차례에 걸쳐 개인면담을 갖었고, 그과정에서 군생활의 모범적인 면과 군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등을 소대원들에 대한 의식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할 것을 요구함

3) 휴가기간 동안 4명의 기무대 요원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미행했고, 형님과 뉴시터에 있던 것을 분명히 목격했던 기무대 요원들이 복귀후 5.18 집회에 참석했음을 시인 하라고 강요함

4) 군생활 기간동안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병사들을 수시로 면담하면서 당사자를 감시할 것을 종용하였고, 가까이 지내지 말 것을 강요당했다고 함 (위 사실은 내무반 병사들에게 직접들은 내용이며, 가장 심하게 압력을 받은 사람인 손재영이 증언함)

시국관련출신자들에 대한 군내의 인권탄압사례보고

1.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 주 혁 환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2. 군복무기간 및 소속부대 : 94. 12. - 97. 2.

보병 제 7사단

3. 군내의 시국관련출신들에 대한 인권탄압 사례

본인은 7사단 신교대 퇴소후 포병대대로 전출되어 작전과 계산병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상황병으로 4개월간 복무 중 비문취급인가중 발급과 관련해 신원조회에서 시위전력이 발견되었고 비취인가가 나오지 않았으며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대 간부들과의 면담을 통한 조사와 기무부대 직원들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어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이후 정기적인 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 포대에서 1포대로 전출되어 바뀌어진 환경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출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고는 계속되었고 보안검열 기간이면 소지품 검사, 서신 검열 등이 부대 간부와 기무부대 직원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또한 제대 직전까지 전력 때문에 제대시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제대 후 새생활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4. 남기고 싶은 말

제 군대 생활은 신원조회에 의한 전출과 이유없는 심리적 외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항상 주지시키고 각인되는 전력 때문에 활기차고 보람있는 군생활 보다는 경계하고 움츠리는 군생활이 되었습니다. 시위전력자는 곧 좌익이고 그것은 또한 군 내부의 적이라는 논리는 군대에서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국관련출신자들에 대한 군내의 인권탄압사례보고

1.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 신 제 근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군복무기간 및 소속부대 : 94. 1. 11 - 96. 3. 16

3포병여단 922 포병대대

3. 군내의 시국관련출신들에 대한 인권탄압 사례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별 탈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상병 무렵으로 기억한다. 정보장교에게 상황 근무자 명단을 파악하라는 기무사의 연락이 왔다. 그전까지 아무런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나로서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잊혀질 때쯤 갑작스런 기무사 중사의 상황실 방문이 있었다. 상황근무자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이름, 입대적 했던 일에 대해 적으라고 하였다. 며칠후 포대장은 학교 사람들과 편지왕래를 하지 말고, 보관중인 편지나 일기는 모두 없애라고 하였다. 이유는 기무사의 검열이 있다는 것이었다. 편지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각별히 아끼는 사람들의 편지였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고 근무하는 곳에 짱박아(감추어) 두었다.

그 후 그 전과 같은 기무사 중사의 갑작스런 방문이 있었다. 대개의 경우 외부 출입자가 있을 경우 상황실의 직통전화로 즉시 보고가 있으나 이날은 그렇지 않았고, 대부분 대대장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보통이나 바로 상황실로 들이닥쳐 장교 외에 기간병들은 모두 상황실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30여분이 지나서 중사는 상황실에서 나갔고, 곧이어 포대장이 대대장실로 불러갔고, 조금후 포대장의 호출이 있었다. 포대장은 편지를 소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하였다. 이 일로 인해 대대장에게 질책을 당한 것이다.

시간은 흘렀고 병장을 달고 제대를 3개월 가량 앞둔 95년 12월말 일과시간이 끝나

고 점호에 들기 직전 포대장의 호출로 장교숙소로 갔다. 이야기인즉 사단(27사) 지역의 예하 부대에 학생운동 전력이 이는 병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입대전의 운동 전력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은밀하게 시작된 조사가 점점 죄어 오는 듯하였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학교 상황과 함께 군입대자에 대한 조직사건과 같은 불안한 생각만이 떠올랐다. 당시 애인에게 나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 일반편지(군사우편이 아니라 부대밖에서 우표를 부쳐 보냄)로 보냈다. 그때까지 편지를 못받은 적은 없었는데, 그 편지는 우송되지 않았다. 전역하는 날까지 더 진행된 것은 다행히 없었으나 전역 신고를 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웠다.

4. 남기고 싶은 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학생운동의 전력자들이 군입대를 하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군 수사기관의 요주의 인물이 되어 일반 병사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면, 군 당국은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Part 4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을 촉구하는 교수 및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탄원서명

1.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탄원서명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권오현
-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외 86명

2. 대학교수 탄원서명

- 상지대학교 김찬국 총장 외 70명

1.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탄원서명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권오현
-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외 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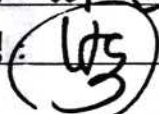
- | | |
|-------------------------|--------------------------|
| 김상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대표) | 박순경(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
| 김정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 문규현(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
| 권영길(국민승리 21 대표) | 박순경(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
| 이해학(주민교회 목사) |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
| 배은심(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회장) | 홍순석(여주이천 일하는 사람들 회장) |
| 김익영(안성사랑청년회 사무국장) | 김영기(단군단 집행위원장) |
| 이희영(단군단 조직국장) | 박태신(단군단 총무위원장) |
| 김거성(구리남양주 시민모임 의장) | 김석현(관악구 낙성대 만남의 집) |
| 이종무(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처장) | 천영세(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지도위원) |
| 권처홍(민주주의 민족통일 울산연합 의장) |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 이상효(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차장) | 지문옥(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직국장) |
| 김병권(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도천수(민족사회운동연합 공동의장) |
|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의장) | 이형모(시민의 신문 사장) |
| 이장희(경제정의실천연합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문성순(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정책기획실장) |
| 백찬홍(한국기독교사회 선교협의회 국장) | 이동건(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
| 이미혜(통일을 여는 민주노동자회 회장) | 박인배(민족예술인 총연합 기획실장) |
| 유기홍(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조양원(전국연합 정치위원장) |
| 정형주(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정치위원장) | 원용배(경기동부연합 지부장) |
| 도영호(경기남부연합 의장) | 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 |
| 이상호(수원연합 의장) | 전한식(인천연합 공동의장) |
| 정동석(인천연합 자주통일위원장) | 지 선(전국불교운동연합) |
| 최규협(국민승리 21 집행위원장) | 김금수(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공동의장) |

차승렬(경제정의실천연합 통일협회 부장)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상임의장)
 문재웅(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김현배(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박기학(서울연합)
 최봉규(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김혜수(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김현배(전국연합)
 이기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자현(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오정윤(한국민족청년회)
 김영호(서울연합)
 이중원(성동광진 민주시민회)
 박세길(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김한호(민족회의 원주지부)
 조용술(민족회의 원주지부)
 오종렬(광주전남연합 의장)
 문대골(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최교진(통일맞이 대전충남 겨레 모임)
 정진동(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의장)
 박찬식(제주 43 50주년기념사업추진범국민위원회 기획팀장)
 김보협(한겨레 신문사 기자)

권헌열(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금철(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사)
 김종일(서울연합)
 이하섭(영등포 청년노동자회)
 박정기(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장만수(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이수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규(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김귀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재훈(서울연합)
 진용근(신바람)
 박석인(구로사랑민주협의회)
 하상연(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강정구(민족회의 원주지부)
 배다지(전국연합 공동의장)
 고송자(전국여성농민회 연맹)
 임선희(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윤순려(천주교 여성공동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탄원 서명

1. 우리 사회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참다운 민주주의와 화해, 단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심수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재는 잣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폐쇄된 사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3.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발생한 양심수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수형생활 이후 군입대라는 또다른 사회적 격리를 겪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형생활-군입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는 이들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로 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3-6년의 사회적 격리 후 30세가 다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5. 한국의 병역법은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탄력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6. 이상의 이유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88년도 병역법 시행령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 세 명: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직 책: 상임공동의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박 순 정
 서 명: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김대중 대통령님께

먼저 건국 50주년의 뜻 깊은 해를 김대중대통령님과 함께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0만의정권교체와 함께 맞이한 이번 건국 50주년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영원과 개혁열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우리 역사는 민주와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양심수에 사형수까지 되었던 분, 연금과 광명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분과 정권교체와 건국 50주년을 함께 맞이한다는 것은 급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지난 50년의 역사에 고여있던 독선과 오만의 정치현실, 타인에 대한 미움과 독선의 현실을 견어내고 평화와 이해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으로 국민을 위면하는 정치현실의 개혁, 고통에 빠진 민생을 구원하는 일, 민족이 갈라져 서로에게 증오의 독살을 쬐는 분단현실의 극복 등 새 시대를 위한 과제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돌려보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가 함께 화해와 단합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심의 문제로 수감 중인 양심수를 부자유의 창설에서 자유의 마당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입니다. 이들의 사회로의 '복귀'는 특히 학생양심수들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깊은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배와 구속의 시간을 보낸 이들이 다시 상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참수시절을 그렇게 내던지게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정권의 오만과 독선, 국민기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진정한 민주시대'의 국민의 정부에서 그들의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해결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나이에 사회에 발을 딛어야 하는 이들, 청춘을 그렇게 신산하게 보낸 이들의 군정집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사회적 격리와 계속되는 감시와 정치적 압박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새 시대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참된 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들 학생양심수들의 군정집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여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을 사회의 변두리에서 서성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기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최초로 맞은 민주적 정권에서 과거와는 다른 민주개혁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 모두의 기원일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믿고 과감히 나갈 때, 국민의 지지와 애정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과거의 분행했던 정치적 귀결사로부터 교훈을 찾고 더 이상 우리의 역사가 그러한 불행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러한 과거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김대중대통령님께 거는 우리 국민의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 앞에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믿는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용기와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지혜와 용기가 항상 김대중대통령님과 함께 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 46번다시
죽은고려
이 히니
부사
김기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탄원 서명

1. 우리 사회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참다운 민주주의와 화해, 단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심수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재는 잣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폐쇄된 사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3.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발생한 양심수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수형생활 이후 군입대라는 또다른 사회적 격리를 겪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형생활-군입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는 이들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로 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3-6년의 사회적 격리 후 30세가 다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5. 한국의 병역법은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탄력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6. 이상의 이유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88년도 병역법 시행령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체명: 민주회생헌정가족연맹총합의회
 직책: 공동의장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성명: 김오한
 서명: [signature]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김대중대통령님께

정부수립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투쟁하셨던 김대중대통령님과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맞아 제2건국의 깃발을 세우고 분투하시는 대통령님께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국 50주년의 의미는 단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 국민이 만들어 온 민주발전의 역사, 김대중대통령님을 포함한 민주세력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 역사 속에는 왜곡되고 좌절되어왔던 민족의 수난이 녹아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국 50주년을 50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맞이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남다른 감동으로 될 것입니다.

건국 50주년은 제2건국의 출발이며 그 핵심적 과제는 과거의 부정을 혁파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구태와 구습을 타파하는 정치개혁, 민생의 안정과 평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통한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등 산적한 민주개혁과제들이 우리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경제적 국난을 맞아서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역경을 이기기 위한 화합과 단결의 과제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우리 국민이 시대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님께 부여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김대중대통령님을 선택한 국민의 열망은 그 자체로 미래의 희망일 것입니다. 이 과업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만 동시에 영광스런 과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발전과 사회개혁의 길에 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힘도 김대중대통령님을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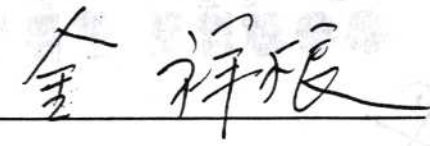
과거의 아픔과 시련을 털어버리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할 지금, 우리 국민은 보다 명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과거의 정치현실에서 발생한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음아닌 양심수문제의 완전해결을 의미합니다.** 양심수 문제의 완전해결은 그들에게 사회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격리로부터 복귀, 처벌로부터 통합으로 그들의 처지와 조건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감 중인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반 정치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양심수의 경우 이들이 출소 후 다시금 군정집대상자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군대에 묶이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경우 취업연령의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통합과 복귀'를 지향하는 근대적 사법정신과도 걸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젊은 시절의 예국열정으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이기에, 또한 독선적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과정에서 구속된 자들이기에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바 '최초의 정통성있는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이들을 폭넓게 품어안는 것이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들 학생 양심수들이 평생을 사회의 변두리에서 서성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화해와 통합의 시대적 요구와도 대립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군정집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시대화합의 요구에 필요불가결한 과제입니다.

건국 50주년은 화년의 연수입니다. 그 의미는 환원, 복귀, 화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새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김대중대통령님이 시대의 선두에서 실현시켜 나갈 때, 국민적 지지와 애정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의 과오는 이제 영원히 과거의 일로 만들어 가야하며 그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김영삼정권의 출발과 끝을 보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에 대한 깊은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재보선의 결과는 그러한 교훈에 대한 생생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하며, 그리고 국민의 애정과 지지가 식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redacted]

이름: 

김대중 대통령님께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맞는 건국 50주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쓰러져 간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연례를 김대중대통령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은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모든 국민의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하기에 국민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러한 국민적 민주열망과 민주개혁의 시대적 요구가 하나의 구체적 역사로 나타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김대중대통령님 또한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때론 사형수로, 때론 양심수로, 때론 연금에 망명으로 희생을 당해왔던 분이기때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지난 정권까지 이 땅에는 오만과 독선, 국민기만만이 횡행하는 황폐한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의 이름으로 출발한 김영삼정권의 끝을 보면서 누구나 국민의 지지와 애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애정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 오늘의 시기에는 다음아닌 민주주의와 사회개혁, 통일의 염원을 사십없이 품어안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그러한 민주개혁의 요구는 지역감정과 정쟁,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질서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 남과 북의 오래된 갈라짐을 극복하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0년동안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요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은 국민의 정부가 위치한 초석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과거 김영삼정권의 과오를 되돌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개혁의 과감한 출발은 과거의 부당하고 왜곡된 정치현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언급한 바 '최초의 정통성 있는 정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에 과거의 정치현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수감된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전원석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두운 사회적 격리의 창살에서 밝은 사회생활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해와 통합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요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라는 시대의 학살자들 조차 조건없이 사회에 복귀한 마당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설사 그들이 그 어떤 잘못을 했대손 치더라도 '내란목적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복귀'야말로 참다운 민주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징표, 그 자체입니다. 사회적 복귀의 보장을 위해선 특히 학생양심수들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애정있는 배려가 요구됩니다. 학생양심수의 경우 수배와 구속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군대로 징집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탄원 서명

1. 우리 사회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참다운 민주주의와 화해, 단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심수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재는 잣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폐쇄된 사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3.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발생한 양심수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수형생활 이후 군입대라는 또다른 사회적 격리를 겪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형생활-군입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는 이들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로 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3-6년의 사회적 격리 후 30세가 다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5. 한국의 병역법은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탄력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6. 이상의 이유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88년도 병역법 시행령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체명: 민가련
 직책: 회장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성명: 김정숙
 서명: 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탄원 서명

1. 우리 사회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참다운 민주주의와 화해, 단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심수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재는 잣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열린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폐쇄된 사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3.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발생한 양심수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수형생활 이후 군입대라는 또다른 사회적 격리를 겪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형생활-군입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는 이들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로 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3-6년의 사회적 격리 후 30세가 다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5. 한국의 병역법은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탄력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6. 이상의 이유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88년도 병역법 시행령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번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redacted]	문주희	[서명]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redacted]	이항복	[서명]
3	자유평화통일민족회의	[redacted]	박준경	[서명]
4				
5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2. 대학교수 탄원서명

- 상지대학교 김찬국 총장 외 70명

조홍식(서울대)	허 훈(서울대)	김진균(서울대)
이애주(서울대)	소광섭(서울대)	김인걸(서울대)
안병직(서울대)	백낙청(서울대)	안경환(서울대)
김수행(서울대)	고철환(서울대)	이성원(서울대)
김은경(서울대)	이종숙(서울대)	한인섭(서울대)
장희익(서울대)	박명규(서울대)	김형욱(홍익대 학생처장)
전준수(서강대 학생처장)	김광선(명지대)	이일균(명지대)
서필교(명지대)	홍순남(한국의외어대)	나간채(전남대)
지병문(전남대)	정근식(전남대)	최영관(전남대 사회대학장)
노안영(전남대)	오수성(전남대)	윤성석(전남대)
신원형(전남대)	임두택(전남대)	김경학(전남대)
이상호(전남대)	홍성우(전남대)	홍덕기(전남대)
유면식(전남대)	윤순석(전남대)	조 건(전남대)
이광우(전남대)	선학태(전남대)	김효섭(국민대)
박인보(국민대)	황병호(강원대 산림과학대 학장)	이상룡(강원대)
김남훈(강원대)	서기준(조선대)	최성중(조선대)
장겸선(동신대)	김재국(동신대)	손승광(동신대)
이남구(동신대)	김영욱(호남대)	신귀현(호남대 경상대 학장)
김용화(호남대)	백운선(호남대)	김한배(호남대)
천병권(호남대 교무처장)	오세운(호남대)	염정의(호남대 학생처장)
이정용(호남대)	이원장(호남대)	이동렬(호남대)
김종호(호남대)	주동황(광운대)	이창근(광운대)

탄 원 서

■ 탄원의 요지:

1.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학업복귀와 사회복귀를 희망합니다.
2. 인도적인 견지에서 청년학생 양심수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 탄원인:

상지대학교

총장: 김 찬 국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탄원서』

- 탄원의 요지 : 1.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학업복귀와 사회복귀를 희망합니다.
2. 인도적인 건지에서 청년학생 양심수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김대중대통령께

늦게나마 50년만의 정권교체와 새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권교체는 새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이며,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된 것이기에 그 의미는 실로 장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부도사태를 맞아 국민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고 떨어진 국가의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계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국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의 현재가 있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당대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주와 정의, 통일을 향한 열망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부득이 많은 청년들이 수배되고 구속되어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실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 또한 청년학생들의 열정이 과도한 데서 나온 것이기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아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과거 누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외치셨고 그로 인해 6년여의 옥고를 치르는 등 아픔을 겪어야 했던 대통령이시기에 청년학생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청년 학생들의 희생은 분명 정치환경에 의한 것이었기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양심수의 석방과 함께 이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과 수형 생활에 이은 늦은 나이의 군복무입니다.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시기에 정치와 사회의 그릇된 현상을 인식하고 거리로 나가야 했던 제자들이, 인신의 구속됨

으로 인해 학업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다시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 현실의 벽 앞에 사회진출의 의지를 잃고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진출에 커다란 장애가 될 전과의 명예를 안고 있는데, 군복무까지 하고 나면 국가기관과 일반 기업체의 취업연령을 훨씬 넘은 서른 가까운 나이가 되고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만 될 아픔이며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국관련 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뀌는 시기마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이미 4차례에 걸쳐 해결된 전례가 있고, 김영삼정권 집권 초기에도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530여명의 군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우리사회에 아직까지도 부당하게 인신이 구속되고 탄압 받는 양심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권이 민주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치유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민주와 인권을 사랑하는 한국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가적 사활이 걸려 있고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전제되어야 할 개혁 또한 우선 순위를 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년학생의 군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결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Part 5

94년도 시국관련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 자료

**: 과거 권위주의적인 김영삼정부하에서도
시국관련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했다!**

兵役法施行令改正에 관한 請願
審查報告書

1993. 12.
國防委員會

1. 審查經過

가. 請願者 姓名 : 김성중外 10人

住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나. 紹介議員 : 鄭大哲議員

다. 接受日字 : 1993. 4. 29

라. 回附日字 : 1993. 5. 7

마. 上程日字 : 第158回國會(定期會)

第1次請願審查小委員會(1993.5.21)

上程·質疑

第2次請願審查小委員會(1993.6. 8)

質疑·討論

第4次請願審查小委員會(1993.11.22)

議決

第11次委員會(1993.12. 9)

小委審查報告 : 議決

2. 請願要旨

현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는 受刑者의 補充役 편입 대상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者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時局關聯活動으로 구속되어 2년 미만의 刑期를 마친 受刑者들은 現役兵입영대상이 되어야 하나 現規定內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관성 없이 수차 改正되는 등 法的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수형생활이 民主化를 위한 政治的 犧牲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補充役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兵役法施行令 第103條 및 兵務廳 受刑者처리기준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3. 請願紹介理由

지난 6共和國이 양산한 時局관련 구속학생들 중 약 400여명이 2년 이상의 刑을 宣告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후 곧 입영해야 함. 이들 時局관련 구속학생들 중에는 청주대 백상진씨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실제

服役期間이 2년이상이 되고도 단일 宣告量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입영해야 하는 사람도 20여명이나 됨. 당연히 實刑 1年 또는 1年6月을 服役하고도 資格停止 등의 제약을 받은 60여명의 대상자들 또한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 반면 軍服務중인 者가 拘束되었을 경우 2년미만의 刑을 宣告받고도 補充役에 編入할 수 있게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時局관련 拘束學生들에 대한 편파적 徵集을 규정하고 있는 兵役法施行令 第103條 改正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時局관련 구속학생들이 과거 軍事政權下에서 벌였던 활동은 이제 文民政府시대를 맞아 그 평가가 再試圖되어야 할 것임. 이들 학생들의 활농은 범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해야 함. 그럼에도 현재 時局관련 拘束學生들에 대한 편파적인 徵集 문제가 현정부개혁의 死角地帶에 방치되어 있음. 過去清算과 民主改革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여 본 請願을 소개함.

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趙在錫)

가. 請願人들은 1989年 3月 25日부터 '93.3.24 사이에 時局관련 사건으로 2年미만의 刑을 宣告받은 受刑者들로서(533명 대부분 集示法違反 그외에 國家保安法, 暴力, 火焰瓶사용 處罰法違反등임) 시안시기의 時局관련 情狀으로 受刑생활을 할 것은 民主化를 위한 犧牲으로 과거의 政治的 犧牲에 대한 治癒와 國民化합의 차원에서 그동안 兵役法施行令 및 兵務廳의 施行細則(수형자 처리기준)이 政治적 반대자에 대한 社會隔離次元에서 수시로 改正 악용되어 왔던 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現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와 兵務廳의 受刑者처리 기준을 '88.8.1 부터 '89.3.25까지 施行된 것과 같이 還元改正하여 時局관련 수형자를 補充役に 편입시킬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임.

나. 이 請願에서 要求하고 있는 施行令 改正내용은 '89.3.25 改正된 現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는

現役兵入營對象者로서 2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刑을 받은 者(그 刑이 執行猶豫된 者는 제외)에 대하여는 補充役に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年미만의 刑을 宣告받은 者는 보충역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 現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第1項第1號중 但書(집행유예자 제외)를 삭제하고, 同條에 第2項을 “兵務廳長은 現役兵入營 또는 防衛召集 대상자로서 1989.3.25일부터 1993.2.24까지 第1項第1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罪質, 刑量, 資質등을 감안하여 補充役編入 또는 방위소집 免除處分을 할 수 있다” 와 같이 新設 改正함으로써 '88.8.1 改正된 兵役法施行令과 같이 환원하여 時局관련 수형자들을 보충역에 編入 시켜 달라는 것임.

다. 이 請願에 대하여 國防部에서는 '89.3.25 兵役法施行令 第103條를 개정하여 2年이상의 實刑 宣告 받은 者(집행유예자 제외)만 한정하고 2年 미만 受刑者라도 罪質, 刑量, 資質등을 감안 補充役編

入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兵務廳長의 裁量條項을(同條 第2項) 削除한 것은 現역복무중인 者의 受刑者 처리기준 2年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改正한 것이고, '89.3.25이후 兵務廳의 수형자 처리기준에 의해 1年이상 2年 미만의 實刑宣告를 받은 者 중 罪質이 흉악한 殺人, 強盜, 暴力犯등 17개 刑事犯에 해당하는 者는 軍의 사고예방과 指揮負擔을 고려 入營順位를 後順位로 조정하고 있으며, 請願趣旨와 같이 現행 兵役法施行令을 改正하여 刑量을 下向조정할 경우 現역복무중 2年이상 宣告받은 者의 보충역 編入條項과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이 改正으로 인해 일반 刑事犯도 免除處分을 받게 되며 그동안 現役으로 입영 既 服務중인 2年미만 受刑者와의 형평성문제등이 발생, 심층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 國防部의 입장임.

라. 이 請願趣旨대로 兵役法施行令 第103條를 改正하거나 同法施行令 改正없이 兵務廳長이 보충역 편입처분 지침을 새로 정해 청원인들을 보충역으로

편입 처분하는 경우 時局관련사건 2年 未滿의 受刑者중 既入營한 者의 처리등 형평성문제가 생기고 또한 類似한 사건 關係者들에 대한 先例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檢討 合理的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임.

5. 質疑·答辯要旨

없 음.

6. 討論要旨

없 음.

7. 請願審查小委員會 審查內容

가. 小委員會 審查經過

第1次小委員會(1993. 5.21) 上程·質疑

第2次小委員會(1993. 6. 8) 質疑·討論

第4次小委員會(1993.11.22) 議決

나. 小委員會 審査報告 要旨

(小委員長 徐秀宗委員)

지난 時期의 民主化를 위한 時局관련 활동으로 비록 補充役に 編入할 수 있는 2年이상의 實刑 宣告者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手配·拘束·受刑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不利益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政治的 犧牲에 대한 治癒와 國民和合의 차원에서 國防部에 대하여 이 請願의 趣旨을 긍정적으로 적극 檢討하여 상응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意見書를 첨부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하였음.

8. 審査結果

國會請願審査規則 第11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함.

9. 意見書

請願人들은 '89.3.25부터 '93.2.24사이 集示法 違反등 時局관련 사건으로 2年미만의 刑의 宣告를 받은 受刑者들로서 現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와 兵務廳의 受刑者 處理基準을 '89.3.25 改正 이전인 '88.8.1부터 '89.3.24까지 施行된 내용과 같이 다시 還元改正하여 이들 時局관련 受刑者들을 補充役に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趣旨인 바, 지난 時期의 民主化를 위한 時局관련 활동으로 비록 補充役に 編入할 수 있는 2年이상의 實刑宣告者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手配·拘束·受刑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不利益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政治的 犧牲에 대한 治癒와 國民和合의 차원에서 國防部에 대하여 이 請願의 趣旨을 긍정적으로 적극 檢討하여 상응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구함.

청원소개건의서

청원인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redacted]
	성 명 : 김성중 외/9인
건 명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
소개년월일	1993. 4. 28
<p>소 개 의 건</p> <p>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철회 문제는 역대정권에서 민주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함께 제기되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과거청산과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시국관련 제적생들의 복적문제와 함께 이미 80년, 84년, 88년 세차례에 걸쳐 해결된 선례가 있습니다.</p> <p>지난 6공화국이 양산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중 약 400여명이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후 곧 입영해야 합니다. 이들 시국관련 구속학생들 중에는 청주대 백상진씨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실제 복역기간이 2년이상이고도 단일 선고량이 2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입영해야 하는 사람도 20여명이나 됩니다. 당연히 실형 1년 또는 1년6월을 복역하고도 자격정지 등의 제약을 받은 60여명의 대상자들 또한 입영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반면 군복무중인 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에 대한 편파적 징집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벌였던 활동은 이제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그 평가가 재시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학생들의 활동은 범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국관련 활동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 개개인이 받았던 사회적 제약은 사회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p> <p>정부는 정원령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제적생들에 대한 복적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는 바로 시국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참여 및 능력 발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p> <p>그럼에도 현재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에 대한 편파적인 징집문제가 현정부 개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p> <p>김성중씨(세종대 국문학과 4학년 재학중)가 「병역법시행령103조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청원하는 바 본 의원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차원에서 위 사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병역법 시행령 103조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국회법 제 123조에 의거 소개합니다.</p>	

소개의원 정대철

임 채정 의원의 질의

-- 1993년 10월 28일 정치분야 질의중에서 --

지난 6월 8일 국방위원회에서 병무청장이 "시국사범의 징집문제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국사범 징집대상자들이 문민정부 하에서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 신 계륜 의원의 질의

-- 1993년 11월 3일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

군징집 대상 시국학생사범을 과거 청산차원에서 구제하라.

총리에게 묻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유신시대부터 자의적으로 6차례에 걸쳐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징집의 굴레에 묶어 두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유화조치를 취할때마다 과거청산 차원에서 시국관련 학생들의 징집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가 6공화국 하에서 시국사범으로 형을 살고 현재 입영적령기를 4 - 5년 지난 5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병무청장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방부는 이제와서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법무부가 형식논리를 떠나 90%이상의 시국관련수배자를 수배해제한 조치나, 교육부가 제적생의 복교조치를 과거청산 차원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다가 구속되어 뒤늦게 입영을 앞두고 있는 500여 학생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위의 신계륜 의원의 대정부질의 내용은 11월 3일자 중앙일보, 국민일보와 11월 4일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11월 3일 신계륜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서가 11월 10일 신계륜 의원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답변서는 다음 장에 첨부합니다.

○ 신계륜 議員(民主)

국무총리 답변서

民主化를 위해 앞장섰다가 拘束되어 뒤늦게 入營을 앞두고 있는 500余 學生을 救濟할 用意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現行 兵役法에 2年以上의 實刑 受刑者에 한하여 補充役에 編入하거나 防衛召集을 免除處理하도록 되어 있으며, 時局事犯의 경우에도 同一하게 處理하고 있습니다.

○ 신계륜 議員께서 質疑하신 時局事件과 關聯하여 拘束되었던 學生들의 兵役問題를 救濟하는 問題는

이들 學生들 뿐만 아니라 年間 8千余名에 이르는 一般 刑事犯과 既 服務中인 1萬6千余名의 受刑經歷者와의 衡平 등에 問題가 있어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것입니다

○ 다만, 현재 이와 關連한 請願이 國會에 繫留中이므로 決定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措置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서 제출에서 국회통과까지

9. 意見書

請願人들은 '89.3.25부터 '93.2.24사이 集示法 違反等 時局관련 사건으로 2年미만의 刑의 宣告를 받은 受刑者들로서 現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와 兵務廳의 受刑者 處理基準을 '89.3.25 改正 이전인 '88.8.1부터 '89.3.24까지 施行된 내용과 같이 다시 還元改正하여 이들 時局관련 受刑者들을 補充役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趣旨인 바, 지난 時期의 民主化를 위한 時局관련 활동으로 비록 補充役에 編入할 수 있는 2年이상의 實刑宣告者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手配·拘束·受刑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不利益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政治的 犧牲에 대한 治癒와 國民和合의 차원에서 國防部에 대하여 이 請願의 趣旨를 긍정적으로 적극 檢討하여 상응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구함.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의견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 103조를 개정하여 '89.3.25~'93.2.24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 미만 수형자의 징·소집면제 청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요구한 국회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거 청원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일괄적인 병역면제 요구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민개병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무행정의 일관성 및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기간·특정집단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수형기간과 취업을 위한 사회복귀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기합산 2년 이상 수형자와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는 징·소집을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18개월 복무토록 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청원인들도 이를 수용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하겠습니까.

▲ 기본방침

- 합법적·공개적인 처리가능 방안
-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한 방안
-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

▲ 처리기준

· 형기합산 2년 이상자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	제 2국민역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6세 이전 대학졸업자 · 1년 미만 형 선고자	보충역

▲ 대상인원 판단

확정인원 (207명)	예상인원 (200명)
· 제 2국민역 : 120 · 보충역 : 87	· 제 2국민역 - 1년 지연시 : 57 ✓ - 2년 " : 83 ✓ - 3년이상 " : 60

※ 2년 이하 지연시 제 2국민역 편입 대상인원
120 + 57 + 83 = 260명 (64%)

만 29세까지 연기 12학기

시점(기입) 반영 공학(2A) 제외

▲ 기타조치

- 대학제적자중 복학한 자는 29세 까지 졸업가능한 자에 한하여 입영연기 조치
- 기입영 복무중인 자는 본인의 원에 의거 상기 기준을 적용 처리

영장은 늦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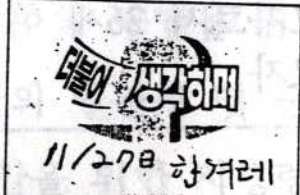
4.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왜들 이러는가? 시국관련 복역 학생들이 긴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군복무로 끌려가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가? 그들은 이미 국가를 위해서 한 몸 바쳐 지나간 복역을 마쳤는데, 이제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사회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여야만 하는가? 오늘날 문민정부를 태어나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남들처럼 시국에 관련되지 않고 얼마든지 적령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사회의 역군들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복역 학생들의 구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일자 병무청측은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병무청장은 7월6일 '합의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의 시대착오

그러나 국방부 실무자들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시국관



허용을 결정했고, 병무청장은 6월8일에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이들의 병역처리 문제는 국방부, 육군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의견표명과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의 정대철 의원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데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

나는 여기서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한다. 국민화합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시국사범 학생들의 끝없는 수난

그들은 분명히 일어서 일신의 안일을 뒤로 하고 군부독재 정치를 물리치고 나라의 민주화로 민주주의를 되찾는 운동을 펼쳐 이른바 '시국사범' 또는 '운동권 학생'이라는 본의 아닌 영예를 안고 그 지나간 철창신세를 지지 않았던가?

복역뒤 또다시 군복무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저 방관만 하거나 더 나아가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그들을 비난하고만 있지는 않았던가? 그것도 부족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과거 부조리와 비리의 잔재들을 청산하여 전국민 화합을 이룩하려는 이 시각에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을 또 불잡아 두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상준

한국외국어대교수·영어교육학

들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대로 겪은 이른바 시국사범들이 사면복권되고 정원령까지 고쳐 그들의 복학을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국방부만이 '형평' 운운하며 자만을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국사범들의 병역 문제가 5공, 6공을 통하여 정권 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앞치락뒤치락, 정권의 권리대로 줄속 개정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밑거름이었거늘

왜들 이러는가? 형평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자문자답을 하기 바란다. 그들은 얼마나 더 담해야만 형평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았는가? 문민정부의 밑거름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거늘!

中央

독자페이지

1993년 3월 31일

水曜日

(20)

나는 강릉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작년 12월 현역병 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가 이번 3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군정집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이를 해석하는데 복수형

해 구속된 학생을 강제로 징집하려는 국방부·병무청과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려는 양심수들 사이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병역법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어 왔던 것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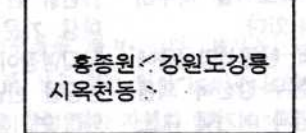
취급하는가하면 오히려 시행세칙을 만들어 17종의 일반수형자들은 지휘상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입영 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역법은 시국사범판단을 집중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탄압의 도구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6공화국 이후 5백여명의 구속학생들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병역법 시행령 改正을

으로 2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법해석의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병역법 시행령 자체에 문제 소지가 존재하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다.

70년대부터 병역법과 그 시행령은 양심수 존재와 뿔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적인 탄압에 의



시 89년 3월 공안정국에서 개악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양심수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령에는 죄질에 상관없이 2년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군정집을 면제시킴으로써 양심수들을 보통의 범죄자로

군대로 돌려 가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양심수들의 20대를 동방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러한 징집은 신성한 국방의무라기보다는 인권유린이자 과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창산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지금 병역법 시행령에 의한 구속학생 등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4.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6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구속된 학생들의 군정 집 문제 해결이 대학교수들 및 여·아의원들의 적극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의국어대 이상준 교수(사범대학장) 등 대학교수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승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양심수 제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서명교수 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관련 학생구속자 5백30여명의 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회견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이미 병역의무에 못지않은 희생을 치렀으며, 이들의 희생이 민간정부의 출범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면 연령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봉쇄당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초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탄원서명운동에는 원주 삼지대 김찬국 총장과 성균관대 장을병 총장, 외국어대 이강혁 총장 등 11개 대학 총장을 비롯

양심수 출신 병역 해결 교수·의원들 참여 활기

1천4백여명 서명...국회 정식안전처리

해 전국 48개 대학의 교수 1천3백17명이 참여했다. 또 오는 3일로 예정된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이들 시국관련 학생구속자들의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안전이 올라 있다.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명운동에도 황나주·최형우·김신욱 의원 등 민주당 32명과 이기택 대표, 김원기·정대철·이부영 의원 등 민주당 93명 및 무소속 등을 망라해 모두 1백3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국회 국방위도 최근 청원심사 소위를 열어 '병역법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 보호역 편입에 관한 청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삼입위의 결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황인성 국무총리도

이달초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국회 계류중인 청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결정을 내려 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학생 가운데 10여명에게 이미 징집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들이 영장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항의해 연기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1년 안팎의 실형과 징기간에 걸친 수배생활로 입대 적령보다 4~5살 많으며, 일부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어 징집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정아무개(27)씨의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이 충격으로 유산하기도 했으며, 농촌을 지키겠다고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아무개(27)씨는 뒤늦은 입대로 농촌 정착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암담한 처지다.

학생운동 관련 구속자들은 그동안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양심수들의 병역문제를 '과거청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선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특히 "군사정권이 그동안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막기 위해 6차례나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지난 88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공안정국 아래에서 실종된 개정안 수준으로 법령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시국사건과 관련해 징역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면제 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체 수형기간이 2년 이상인 13명에 대해서만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박종언 기자



"영장을 반납합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이들은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내 청춘은 어떡하라고?”

'양심수 군 문제 해결 모임' 5백여명, 징집 명령에 반발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행정 당국이 내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서울대 사회학과 졸업)에 속한 5백여 명의 젊은이들.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따른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 6공화국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각종 사건으로 복역한 이들은 대개 20대 중·후반이고 군대에 다녀오면 취업 연령을 넘어서는 점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막막함이 국가 권력에 대한 또 한번의 도전을 부추긴 것이다.

지난 10월22일 오전 11시 병무청에서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졌다. 이 모임 회원인 노태술씨(27) 등 4명이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병무청 직원과 기어코 영장을 반납하려는 젊은이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이들은 영장을 내던지다시피

하고 병무청을 빠져나갔다. 병무청으로서도 건군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더구나 영장 반납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없는 터여서 병무청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셈인데, 결국 궁여지책으로 이들의 영장에 대기업 입사원서를 첨부해 입영 연기 처리하고 말았다.

올해 1월 모임을 결성한 이들은 벌써 10개월 넘게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들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병무청도 한때 전향적으로 해결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어서 이들의 운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전 한국의국어대 총학생회장 정재원씨(27)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 무산되기를 거듭하는 도중에 부인이 충격을 받아 유산하기까지 했다.

일부는 영장 반납... 정치적 결단만 남아

얼핏 보면 군대 안 가겠다고 떼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뚜렷하고도 절박한 입영 거부 논리를 갖추고 있다. "김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는 학생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군대에 가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후 사면 복권되어 사회에 나온 친구들은 아직 '징역 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모임 대표 김정훈씨의 말이다. 오랜 수배 생활 끝에 검거되어 수형 생활을 한 후 군에 입대하는 행로는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이 밟아온 전형적인 길이었다. 20대 청춘의 절반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흘려보낸 셈이다.

정부가 양심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해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88년 8월1일 정부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방위 소집 대상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아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국사범들이 부당 징집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는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4백47명을 방위소집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던 병역법 시행령은, 공안 정국이던 89년 3월25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징집 면제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다. 지금은 이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 학생운동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89년 3월25일 이후에는 학생운동권에 대해 군대가 감옥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해온 것이다.

이들의 딱한 사정은 대학 교수와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서강대 박홍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탄원했으며, 1백여 국회의원이 이들의 군 징집 면제를 호소하는 데 서명했다. 종교계와 재야 인사들도 이들의 형편을 동정하고 나섰다. 점차 이 문제가 사회 여론화하자 황인성 국무총리도 11월3일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강조할 것인지,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다.

吳民秀 기자

6년 시국관련 복역형행 군정집재결토를



△양심수의 민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회원과 가족들이 병풍집개정복합추진하고, 명동성당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金正浩기자]



성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3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후 회장은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3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후 회장은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3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후 회장은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시국사범 군입대 문제있다

적령기 지나 복무... 제대후 사회진출도 장애

노태우씨(89)는 지난 88년 11월 중로 13명과 함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노태우씨 제외한 중로 12명은 1심에서 징역유예로 풀려났으나 노태우는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다.

전과 나온 중로들은 당시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병역법시행령이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징집면제하도록 바뀐 탓에 편입명 명장을 받게 되었다.

반야야 정립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태우씨와 같이 시국사건으로 수행생활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양심수들은 전국적으로 5백3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1월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장 김정후)을 결성하여 관계기관에 '양심수의 부당징집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10월 18일 부리는 기독교회관에서, 이튿날 15일 부리는 민주당에서 동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3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후 회장은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3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후 회장은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국사범 수형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부당징집철폐를 요구하여 시위하고 있다. [김정후 기자]

병역법시행령 및 예규 변화과정

5	84.12.25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면제
	84.12.25 이후	3년미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등 10개 특별법 위반자 면제 (집시법 위반자는 3년이상만 면제)
6	89.12.25	죄질이 상관없이 1년이상 형 선고자로 2년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89.12.25 이후 현재	2년이상 실형선고자만 면제 (집행유예자 제외)

시행령개정 국방부반 반대

시행령개정에 대해 현재 여야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부서인 병무청도 지난 7월 1년 이상 선고받은 수형자구제 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형질정상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함으로써 병무청의 개정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행정전문계에 대해 양군모는 "시국사범에 대한 수혜체계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당연한 해결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수들의 군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수형자·시국사범수형자 구별없이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를 받은 자만 징집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징집명장 받기도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 위해 강제징집등을 이용하여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적 반성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국사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향과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80년, 84년, 88년 제차례 이들을 소급적으로 보충역에 편입시킨 것이 그것이다.

최사민 박형제씨(89)는 "군입대나 시국사범 수형생활이나 형을 종료에 바친 것은 마찬가지"라며 "타의에 의해 강속장이 되고 또 군대에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형영 기자>

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 주장 지난 14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정문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 김승훈 신부, 김재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주최로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 실행 양심수 및 관계가족 1백여명이 동참했다.



“부당징집”항의 6공 당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이 2일 오후 서울 후암동 병무청사에서 병무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국관련으로 형기를 마친 뒤 곧이어 군에 징집됨으로써 장기간 사회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변재성 기자**

해동학교 (1.24)

“시국관련 양심수 군문제 해결하라”

불교계,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정부 성명 발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 김재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산중다원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대표 김정훈) 소속 1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진관스님은 성명서에서 「지난 시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기간의 수배·구속생활을 감내

하며 소중한 젊음을 바쳐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들은 뒤늦은 병역의무로 인해 재차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제 정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승가회, 한국불교보현도량결사회, 석림동문회, 승려시인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 양군모의 김정훈대표는 「오늘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수용여부와 특별조치 형식의 해결방안의 논의가 있을 것이며, 「민약 정부가 시행령 요구안 불가 방침을 고수하거나 학생 양심수들을 보충역으로 돌리는 법안을 만드는 조치를 취한다면 계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면)

“양심수 보충역 편입” 촉구

교계 3백여 승려 성명 병역의무로 사회복귀 애로

“과거청산 정부가 나서야”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보현도량, 석림동문회, 승려시인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조계사내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 6공 시절 젊은이들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장기간 수배, 구속의 생활을 감내하며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 왔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다시 뒤늦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다시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 대해 “이들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국관련 수형자로서 징집대상인원은 4백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과거 청산차원 및 인도

적 견지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종교계, 국회, 대학총학생협의회 등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위한 참원안이 구랍 17일 통과 됐으나 아직 정부의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참여한 스님은 석주, 수산, 화산, 월주, 지선, 진관스님등 3백30여명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이날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하고 “청년 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용당한 조치를 정부가 미루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의 구제야말로 과거청산과 인력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혁 이뤄달라'

유인물·꽃 전달

경북련은 이와관련 ▲총무원과 중무원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중회의원의 결직이 불가능하도록 중헌중법을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양심수 부당징집 하지말라

90년대의 서명철회 운동

개인이든 단체든 90년대의 서명철회 운동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면제법 제정안을 4월 23일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1.25하. 한서제

시국수형자 징집면제 촉구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

김원동 목사 등 1천5백17명으로 구성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기독교적 모임'(대표 김재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임신부)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면제법 제정안을 4월 23일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1.26. 불교사부

부당징집철회를 위한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1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시국사범 병영면제대상 확대

새정부 출범법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1/29

새정부 출범법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시국사범 병영면제대상 확대

1월 29일, 새정부 출범법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시국사범 병영면제대상 확대

1월 29일, 새정부 출범법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1994년 1월 30일(일요일)

시국사범 징집면제 촉구 각교단 성직자 2천명 서명

6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시국사범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군집면제 해결에 종교인들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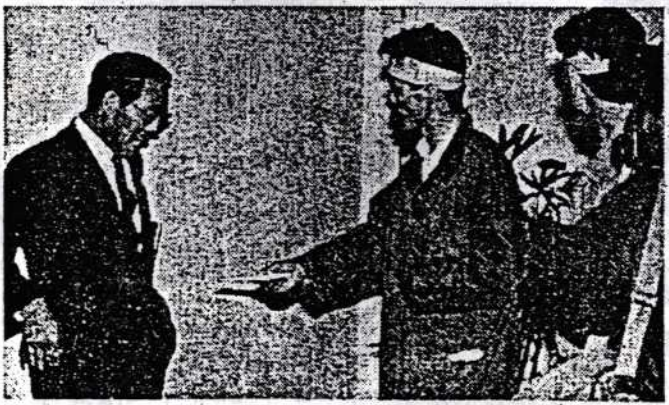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교단의 성직자 2천여명은 최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진 신부)의 서명운동에 참여, "과거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희생당한 젊은이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징집대상자는 5백33명이나 국방부는 이중 합산해서 2년 이상을 수형한 12명만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초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서명운동에는 姜萬一 주교(서울대교구) 등 가톨릭 성직자 1백75명, 宋月珠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대표) 등 불교 인사 3백여명, 姜元龍 목사(크리스천 아카데미 회장), 金成珠 주교(성공회) 등 개신교 1천5백여명, 반진규 교령(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위원장) 등 천도교 7명, 김대선 교무(원불교 서울 사무소) 등 원불교 1백26명, 윤정모씨(소실가) 등 여성계 81명이 참여했다.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면제법 제정안을 4월 23일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은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1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양심수 관련해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 회원 노태술(27)씨 등 4명이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양심수 사회복귀를 반대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원호 기자

사면복권 되고도 基本權 제약

관용 허용뿐만... 舊習 그대로 취업 힘들고 여권 안내취

다. 사면복권된 자들은 관용을 허용받지만, 관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관용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취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관용을 받은 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관용을 받은 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관용을 받은 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풀려난 時局사범 前歴에 "발 쾅쾅"

다. 풀려난 시국사범들이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풀려난 시국사범들이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풀려난 시국사범들이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2년 이상 受刑者나 1년 이상 刑선고자

4월부터 징소집 면제

1994年 2月17日

시국사범 4만 7천 명에 달하는 시국사범들이 4월부터 징소집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2년 이상 수감된 자나 1년 이상 징소집된 자에 대해 적용된다.

2년 이상 수형자 징소집 면제

다. 2년 이상 수형자들에 대해 징소집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에 대한 관용 조치이다.

시국사범 兵役면제 확대

27포인트 증가된 2포인트인 29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는 시국사범들의 병역 면제 기준을 높이는 조치이다.

27포인트 증가된 1포인트인 28포인트

다. 시국사범들의 병역 면제 기준을 27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늘린다. 이는 시국사범들에 대한 관용 조치이다.

실형 1년 받게 받은 시국사범 減額 면제

국방부는 16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사범 등 시국사범 수형자들에게 대한 면제 처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만 27살 이상인 사람은 현행 2년 이상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징소집을 면제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만 26살 이하인 사람과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의 관계없이 모병료에 편입시켜 복무하도록 했다.